

예 산 총 칙

2016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208,579,395	6,257,382
일반회계	202,030,167	6,060,905
특별회계	6,549,228	196,477
기타특별회계	6,549,228	196,477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352,550	10,577
지하수관리특별회계	412,551	12,377
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	1,141,230	34,237
주차장특별회계	4,340,351	130,211
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	302,546	9,076

제 2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16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,961,017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2016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및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